

“IEEPA 위법”에도 트럼프 관세는 계속... 122·301조 카드 꺼냈다

[통상 현안 체크]

관세정책 ‘플랜B’ 본격화하는데 환급은 안갯속 (11p)

[품목분류 동향]

미 품목별 관세 대상 ‘중대형차량 및 버스’
미국 HTSUS와 한국 HSK 연계 및 비교 분석 (28p)

[이주의 초점]

“보호장비가 왜 레깅스?” 관세청, WTO 관세평가·
HS 해설서 ‘오역 374건’ 바로잡아 (4p)

[위클리 뉴스]

할당관세 혜택만 챙겼나... 수입업체 고강도 관세조사
무역위,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및 태국산 섬유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면세점·해외직구도 금지” 관세 체납에 고강도 징수
대책 (7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3월 2일(통권 제2168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보호장비가 왜 레깅스?” 관세청, WTO
관세평가·HS 해설서 ‘오역 374건’ 바로잡아

관세행정실무해설

- 14** 질의응답사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07 Weekly News

판례동향

- 16** 관세판례해설
수입석탄의 성질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해설

통상 현안 체크

- 11** “IEEPA 위법”에도 트럼프 관세는 계속...
122·301조 카드 꺼냈다

품목분류동향

- 28** 품목분류해설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 중대형 차량 및 버스 -
-

“보호장비가 왜 레깅스?” 관세청, WTO 관세평가·HS 해설서 ‘오역 374건’ 바로잡아

번역 정비로 과세 기준 명확화... 법적 불확실성 줄이고 현장 혼선 해소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을 초래해온 국제 관세규범의 번역 오류가 대거 손질됐다. 시대 흐름과 맞지 않던 ‘레깅스’ 등 표현을 바로잡아 과세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해석의 명확성을 높였다.

관세청은 2월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수정한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에 공개했다. 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는 관세 과세 기준과 품목 분류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규범으로, 단어 하나의 오역이 과세 기준의 혼선을 낳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내부 검토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받아 374건(관세평가협정 122건, HS 해설서 252건)을 최종 반영했다. 영문 원문과의 의미 불일치를 바로잡고 실무에 부합하도록 표현을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 실무 해석 왜곡했던 핵심 표현 정정

대표적인 사례는 관세평가협정의 ‘fixed scheme’ 번역이다. 기존에는 이를 ‘고정 가격표’로 번역해 왔다. 그러나 원문이 의미하는 것은 가격표 자체가 아니라 ‘수량에 따라 할인 구조가 사전에 정해진 체계’를 뜻한다. 이를 ‘고정된 할인 체계’로 수정함으로써, 수량할인 인정 요건에 대한 오해 소지를 줄였다.

HS 해설서에서도 실무적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표현을 바로잡았다. ‘to travel singly’를 ‘단순히 여행용’으로 번역한 기존 표현은 차량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문맥과 맞지 않았다. 이를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으로 수정해 품목분류 해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현행(영문)	현행(국문)	변경안(국문)
WTO 관세 평가 협정	<p>Advisory Opinions 15.1</p> <p>2. <전략> ... Quantity discounts are deductions from the price of goods allowed by the seller to customers according to the quantities purchased over ① a given basic period.</p> <p>... <중략> ...</p> <p>It therefore follows that for Customs valuation purposes it is the quantity which has determined the unit price of the goods being valued when</p>	<p>권고의견 15.1</p> <p>2. <전략> ... 수량할인은 정해진 기준연도(given basic period)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 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다.</p> <p>... <중략> ...</p> <p>결과적으로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관련 있다는 것이다.</p>	<p>권고의견 15.1</p> <p>2. <전략> ... 수량할인은 특정 기준 기간(given basic period) 동안 구매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고객에게 물품 가격에서 공제하기로 허용한 금액이다.</p> <p>... <중략> ...</p> <p>결과적으로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을 때 평가되는 물품의 단위가격을 결정한 수량이 중요한 관련 요소가 된다.</p>

	현행(영문)	현행(국문)	변경안(국문)
	they were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② that is relevant. Thus quantity discounts arise only when it is shown that a seller sets the price for his goods according to ③ a fixed scheme based upon the quantity of the goods sold.	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fixed scheme) 에 따라 자신의 물품	그러므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된 할인 체계(fixed scheme) 에 따라 자신의 물품 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HS 해설서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8603 These vehicles may be designed to travel singly , or to be coupled to one or more vehicles of the same type, or to one or more trailer vehicles.	제8603호 해설서 이들 차량은 단순히 여행용 으로 설계되어 있거나 동일한 형의 차량이나 트레일러 차량을 각각 하나 이상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다.	제8603호 해설서 이들 차량은 단독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나 동일한 형의 차량이나 트레일러 차량을 각각 하나 이상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다.

출처: 관세청

■ ‘레깅스’에서 ‘정강이 덮개’로… 품목분류 정확도 제고 및 직역 표현 정비

이번 개정에서 현장의 관심을 끈 부분은 ‘leggings’의 번역 수정이다. 기존에는 HS 해설서에 ‘레깅스’로 병기돼 있었으나, 최근 통용되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될 여지가 컸다. 원문에서 말하는 ‘leggings’는 현대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보호용 ‘정강이 덮개(각반)’를 의미한다. 관세청은 이를 본래 기능에 맞춰 ‘정강이 덮개’로 수정해 의류용 레깅스와의 혼동 가능성을 없앴다.

	현행(영문)	현행(국문)	변경안(국문)
HS 해설서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6406 They include gaiters, leggings , spats, puttees, “mountain stockings” without feet, leg warmers and similar articles.	제6406호 해설서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 레깅스 (leggings)·스패츠(spats)·감는 각반·발 부분이 없는 “마운틴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	제6406호 해설서 이러한 물품에는 각반· 정강이 덮개 (leggings)·스패츠(spats)·감는 각반·발 부분이 없는 “마운틴 스타킹(mountain stockings)”, 레그워머(leg warm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있다.

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어색한 직역 표현도 대거 수정했다. 예를 들어 “동중·동질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음”은 “동중·동질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음”으로 다듬는 등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했다. 단순 문체 개선을 넘어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는 조치다.

또 제8479호 HS 해설서에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중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공구를 제외한다]·소형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제8467호)” 부분을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공구와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

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소형 수지식 공구(제8467호)를 제외한다]”라고 변경했으며, 제1404호 해설서에서 ‘의료용 워딩(wadding)’을 ‘의료물질을 함유하고 있는(medicated) 워딩(wadding)’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영문)	현행(국문)	변경안(국문)
WTO 관세 평가 협정	CASE STUDY 13.1 6. The Customs administration searched for suppliers on the Internet and found many offers for the sale of identical goods, whose retail sale prices for export were between 123.99 c.u. and 148.00 c.u.	사례연구 13.1 6. 세관당국은 인터넷에서 공급자들을 검색하여 동종·동질 물품의 많은 매물들을 발견했으며, 그들의 수출을 위한 소매 판매가격은 123.99 c.u.에서 148.00 c.u. 사이였다.	사례연구 13.1 6. 세관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공급자들을 검색하여, 동종·동질 물품에 대한 다수의 판매 제안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수출용 소매가격은 123.99 c.u.에서 148.00 c.u. 사이였다.
HS 해설서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8479 (III) MISCELLANEOUS MACHINERY (11) Bolting or unbolting machines and metal core extractors, other than hand tools of Chapter 82 and small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pneumatic, hydraulic or with self-contained electric or non-electric motor (heading 84.67).	제8479호 해설서 (III)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공구를 제외한다]·소형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제8467호)	제8479호 해설서 (III)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공구와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소형 수지식 공구(제8467호)를 제외한다]
	THE EXPLANATORY NOTE OF HEADING 1404 (a) Wadding, medicated or put up in forms or packings for retail sale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purposes (heading 30.05).	제1404호 해설서 (a) 의료용 워딩(wadding)이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이나 모양으로 된 워딩(제3005호)	제1404호 해설서 (a) 의료물질을 함유하고 있는(medicated) 워딩(wadding)이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의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포장이나 모양으로 된 워딩(제3005호)

출처: 관세청

이번 개정안은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등 현장 실무자들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를 적용할 때 관련 협정을 더욱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전문은 관세법령포털(unipass.customs.go.kr/cli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HS 해설서 책자는 WCO의 제8차 HS 개정 주기인 2028년에 맞춰 발간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협정의 올바른 해석은 공정한 관세행정의 시작이자 우리 기업의 법적 안전망”이라며, “법령의 모호함을 지속해서 개선해 기업들이 명확한 과세 기준에 따라 무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설서상 레깅스가 의류용 레깅스가 아닌, 보호용 정강이 덮개였다는 점은 번역의 작은 오류가 실무상 혼선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관세청의 이번 개정은 번역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넘어, 관세 행정의 법적 기반을 재정립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 혜택만 챙겼나... 수입업체 9곳 고강도 관세조사

관세청이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관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시장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 점검이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출처: 관세청)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월 27일 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혐의 업체 9곳에 대해 9일 1차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중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규모 상위 230개 업체를 선별한 뒤 이 가운데 혐의가 짙은 9개사를 선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명령 위반 여부, 위장업체를 통한 허위 추천 등 기존에 적발된 부정행위와 연계해 전방위적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4~2025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물량을 수입한 뒤 고가 판매를 목적으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거나, 제3자 명의를 내세워 물량을 부당 확보하고 관세를 포탈한 사례 등을 적발해 총 1,59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수입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국내 거래 세적자료와 유통·판매단가 결정 구조를 정밀 분석한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 중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관세 차익을 부당 편취하거나 이를 해외로 유출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도 병행 조사 대상이다. 또한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량을 과점 매입한 뒤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납품하는 방식의 불공정 거래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할당물량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기한 준수 여부, 실수요자 배정 물량을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유통판매에 사용했는지도 조사한다.

● 중점 조사 유형 ●

유형 1	할당관세 적용 기간 동안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의로 고가 신고
유형 2	부당 경쟁을 통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 확보 및 국내 유통 판매
유형 3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반복적으로 위반 할당관세 추천 요건인 제조를 하지 않고 국내 유통 판매

관세청은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총 43명 규모의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전담반’을 편성했다. 조사 결과 유통·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무역위,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및 태국산 섬유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일본 및 중국산 합금강 열연제품과 태국산 섬유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 사용되는 원재료다. 무역위는 2025년 9월부터 부과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산에 최대 33.43%, 중국산에 최대 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JPE 등 3개사, 중국 바오산 등 6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의 수락을 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분기별 가격 조정 및 이행 보고를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때 해당 수입 물량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및 가격약속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태국산 섬유관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었으나, 여전히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해 향후 5년 동안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경우 2022년부터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수입 감소,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산업피해 재발이 예상돼 5년간 현재 관세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례 중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고자 9.53~19.1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예비판정했다.

| 서준식 기자 |

중소기업 확인 실시간 조회·보이는 ARS 도입... 서비스 혁신 가속

관세청이 중소기업 확인 절차를 디지털 기반 윈스톱 방식으로 개편하고, 고객지원센터(125)에는 ‘보이는 ARS’를 도입하는 등 상담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2월 27일부터 세관의 중소기업 확인 업무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기반의 디지털 윈스톱 서비스로 전면 개편·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이 관세 환급이나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등을 신청할 때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세관 역시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우선으로 확인하거나 서류의 유효기간과 진위 여부를 일일이 검증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 실시간 연계를 통해 세관이 UNI-PASS에서 직접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중기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종이 서류 제출 없이 관련 지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증명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해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25일부터 고객지원센터에 ‘보이는 ARS’ 시스템이 도입됐다. 수입화물 통관 진행 상황이나 해외 직구 관련 상담 등 단순·반복 문의가 늘어나는 가운데, 상담원 연결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음성 ARS 이용 시 약 5분가량 소요되던 상담 시간이 약 10초 내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 김성은 기자 |

“글로벌 탄소규제 대비” 섬유기업 탄소설비 교체에 최대 1억원 지원

정부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섬유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의 전환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 참여기업을 3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국비 22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노후 설비를 고효율·저탄소 설비로 교체하거나, 탄소 배출량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하려는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섬유산업은 원단 제조와 염색 과정에서 고온·고압 공정을 다수 사용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최근 글로벌 패션기업과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원청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 감축과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섬유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해 2027년부터 원료·부품 정보와 탄소발자국, 재생원료 함량 등 공급망 전 과정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설비 설치 비용의 최대 70%, 대기업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탄소감축 전문가 컨설팅이 제공되며, 감축 효과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감축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국도 EU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예고하면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관리는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EU와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입함에 따라 기업의 이행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에 불리한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검사를 낮추고 신속 통관” 한·사우디 AEO MRA 발효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2월 20일 발효됐다.

관세청은 중동 지역에서의 높은 통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사우디 관세당국과 AEO MRA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지속했다. 이후 정보 교환 방식의 조율과 시스템 점검을 마쳤으며 202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AEO 업체 정보 등록을 거쳐 본격 시행에 이르게 됐다.

한국 AEO 수출기업은 자사 AEO 공인번호와 영문상호, 주소 등을 사우디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를 하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AEO MRA를 체결한 국가는 사우디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80%를 차지한다.

| 서준식 기자 |

“면세점·해외직구도 금지” 관세 체납에 고강도 징수 대책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2월 23일 열린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에서 ‘2026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 검사 및 압류를 강화하고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배제 및 면세점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와 내국세 및 지방세 공동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공조를 통해 정보 공유 및 합동 체납 정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체납예상금액 선압류 방식인 보전압류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필수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제재수단이 부족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역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조회를 통해 체납 제재가 가능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 서준식 기자 |

“IEEPA 위법”에도 트럼프 관세는 계속··· 122·301조 카드 꺼냈다

법적 근거만 바뀐 관세정책 ‘플랜B’ 본격화··· 환급은 안갯속



AI 생성 이미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위법·무효로 판단하면서(현지시각 2월 20일), 미국의 관세정책이 법적 정당성의 경계선을 다시 그리게 됐다.

판결 대상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캐나다 35%, 멕시코 25%, 중국 10%) 등이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에 기반해 있어 이번 판결 결과와 무관하다.

2월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대법원은 6대 3으로 IEEPA 기반 관세에 대해 법률상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관세·조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의 전속 권한이며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전제된다는 점, 둘째, 경제·산업 파급력이 큰 조치에 대해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적용 필요성, 셋째, IEEPA 조문 체계상 관세·부과금이 명시돼 있지 않고, ‘규제(regulate)’ 권한만으로 과세 권한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판결문에서 관세 환급 문제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이미 징수된 관세의 처리(환급 범위·절차·시점)를 둘러싼 실무 혼선은 불가피해졌다.

“관세는 여전, 법적 수단만 바꾼다” 122조·301조로의 이동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관세에 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조치를 지속하겠다는 것인데,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하는 글로벌 관세 10%를 발표하고,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후 하루만에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10% 부과로 발효됐으며, 기간은 7월 24일까지로 140일간이다. 이번 글로벌 관세에는 미국 내 재배, 채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주요 광물, 천연자원, 이미 수입 제한이 적용된 품목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문제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와 같은 상황에서 신속 대응 수단으로 최장 150일, 최대 15%까지 임시 관세(또는 쿼터)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IEEPA 공백을 메우는 ‘단기 대체제’로 기능할 수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한 관세도 예고했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정책·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통지·의견수렴·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세 부과 근거	내용	사전조사 필요 여부	부과기간 상한	관세율 상한
무역법 122조	심각한 대규모 무역적자	×	150일(의회승인 시 연장 가능)	15%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관행	○[무역대표부(USTR) 조사]	4년(이해관계자 요청 시 연장 가능)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상무부 조사)	×	×
관세법 338조	외국의 차별적 행위	×	×	50%

출처: 한국무역협회

해외 싱크탱크 및 매체는 비록 미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무역법 122조 기반의 임시 관세가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301조 등 조사를 통한 중장기 관세가 구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조사가 개시됐지만 아직 관세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은 품목이 7개에 달한다. 지난해 4월 1일 의약품에 대한 조사가 개시됐으며, 그밖에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등이 있다.

	조사 중 품목	조사 개시일	주요 조사 대상 품목
1	의약품	2025.4.1.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API) 등
2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엔진	2025.5.1.	항공기 및 엔진부품 등
3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2025.7.1.	태양광 셀·모듈, 반도체 웨이퍼 등
4	드론 및 부품	2025.7.1.	드론, 모터·엔진, 모듈, 센서 등
5	풍력터빈	2025.8.13.	풍력터빈, 발전기 등 부품
6	의료기기·의료용품	2025.9.2.	의료기기·장비, 의료용품 등
7	로봇 및 산업기계	2025.9.2.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등

출처: 한국무역협회

EU·영국은 협정 이행 '브레이크', 한국은 환급 지원 가동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 협상을 끝낸 주요국의 반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월 21일(현지시각) 해외 매체 BBC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대법원 판결 자체가 기업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철강·알루미늄·제약·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관세는 이번 판결의 범위 밖에 남아 있고, 미국이 곧바로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월 22일(현지시각) 폴리τικο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IEEPA 판결 이후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안전한 명확성"을 요구했고,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측에서는 대서양 횡단 무역협정 이행 법안 표결 연기와 비준 보류까지 거론했다. 이는 미국이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떤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 기존 합의가 유지될지 재협상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지 언론은 EU·영국 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동을 리스크로 보고 역내 공급망·대체 시장·대미 협상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예상도 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유관기관의 대응은 '환급 실무'와 '불확실성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통상부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된 직후 긴급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합동 점검을 예고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을 즉시 안내하고,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거래처럼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수출한 기업을 추출해 기업별로 환급 정보를 제공하고, CBP 발표 동향을 실시간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 4,000여개 기업 중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했다.

기업들의 관심은 환급에 집중됐다. 대법원 판결이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환급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환급 범위와 신청 주체·서류 요건·이자 처리 등이 향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KOTRA에 따르면 미국 소매협회·상공회의소 등 관련 업계가 환급 절차의 신속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집행은 상당한 시간과 분쟁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23일 '트레이드 브리프(TRADE BRIEF)'를 발간하며 "한국 수출자 또는 현지 법인·자회사가 수입신고자(OR, Importer of Record)로 통관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직접 환급청구가 가능하며 미국 내 현지 거래업체를 통해 수출한 경우 해당 업체가 수입신고서상 IOR로 기재됐을 가능성이 커 국내 수출자의 환급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수입신고 건의 관세액이 확정되는 정산(liquidation) 전후로 환급절차가 상이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한 관세액을 미 CBP가 검토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통관일로부터 약 31일 후에 이뤄진다. 정산 전이라면 수입자는 사후정정신고로 수입통관 신고내역을 정정해 비교적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정산 후라면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로 환급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법적 절차 성격이 강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스티브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무역 파트너 모두 기존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2026년 재무부(관세) 수입전망도 변함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는 여전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 김성은 기자 |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해외 직구를 한 적이 없는데 통관이 완료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 관련 법령 안내 부서로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특송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 직구를 한 적이 없는데도 통관 완료 연락을 받았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도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 아래 경로로 도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 본인 인증 완료 후 '신규' 버튼을 누른 후 등록하면 담당기관(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추가로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권합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조회 > 본인인증 > 변경 > 사용 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도용신고, 사용정지, 재발급 등 유니패스 시스템 이용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보세·화물 / 보세구역 부호

보세운송 신고를 하려는데 보세구역 부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보세구역 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등록업체 > 보세구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 향수 공병의 HS Code

향수 공병의 품목분류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에 해당된다면 제9616.10-0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향수(scent)·남성용 포마드(brilliantine)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toilet spray) : 책상용이나 포켓용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개인용인지 직업용인지에도 상관없다. 이러한 것은 보통 유리·플라스틱·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의 병모양의 저장조로 구성되며, 여기에 마운트(mount)가 부착되며 ; 이 마운트에는 (분무기구를 갖춘) 두부(頭部)와 압축공기식 압력벌브[종종 방직용 섬유제 망(net)으로 피복되어 있다]나 피스톤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수통관 / 화물진행상황 조회

'1Z'로 시작하는 운송장번호의 화물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신 '1Z0000000000'는 국제화물운송업체 UPS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번호체계로 판단되며,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번호(운송장번호)가 아닙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운송장번호(보통 숫자 9~14자리, B/L 번호, 화물관리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가 있어야 화물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송장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해 고객지원센터 전화(125→20) 또는 인터넷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등으로 재문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음 방법으로 화물진행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화물진행정보 조회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일반인 > 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B/L 번호 입력]

* 시스템 이용문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

운송장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를 통해 안내받기 바랍니다.

* 특송업체: UPS 032-744-3000, 1588-6886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통관진행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합니다. 배송 지연, 수입신고,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입석탄의 성질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해설

조용지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I. 들어가며

「관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즉 수입물품의 성질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관세 부과와 출발점이자, 이후 적용될 품목분류, 관세율, 과세가격 결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관세법」은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해 과세물건의 확정 시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을 「관세법」 영역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번 호에서 살펴볼 사안은 석탄 수입에 있어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및 근거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시가 담긴 판례¹⁾다.

II.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5.11.19.부터 2016.7.29.까지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9건의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 등으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이 사건 제1 수입신고’라 한다)를 했고, 2015.10.8.부터 2017.10.20.까지 미국 등으로부터 7건의 유연탄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 등으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이 사건 제2 수입신고’라 하고, 이 사건 제1 수입신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수입신고’라 한다)를 했다.
3. 원고는, 러시아 소재 석탄검증기관인 SGS VOSTOK LIMITED(이하 ‘SGS’라 한다) 등이 선적지에서 발행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이하 그 분석 결과를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라 한다)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입신고 대상물품인 유연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이거나 5,500kcal/kg 미만에 해당한다고 봐, 다음과 같이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터 2017.2.7. 대통령령 제27841호로 개정된 것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이 사건은 2025.11.14. 대법원 2025두34362로 심리불속행 기각돼 대전고등법원 2025누186(2025.6.17. 선고)으로 작성됐다.

제2조의2에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이거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에 대해 정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해 각 소관 세관에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순발열량(kcal/kg)	5,000 미만	5,000~5,499	5,500 이상
2016.2.5. 이전	22원		24원
2016.2.5.~2017.3.31.	21원	24원	27원
2017.4.1.~2018.3.31.	27원	30원	33원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하역지에서 위 물품의 성질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실시했고(이하 그 분석 결과를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라 한다), 이 사건 물품의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이거나 5,500kcal/kg 이상임을 확인했다.

5. 광주세관의 기업심사에 따른 원고의 개별소비세 등 수정신고·납부

1) 광주세관은 2017.11.20.부터 같은 해 12.15.까지 원고를 대상으로 기업 심사를 실시하고, “원고는 선적지와 하역지의 석탄의 성상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하역지에서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선적지 분석결과를 근거로 수입신고 및 개별소비세 등을 잘못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관세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2) 이에 원고는 2017.12.28., 2017.12.29. 및 2018.1.26.에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이거나 5,500kcal/kg 이상임을 전제로,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이거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에 대해 정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각 수정신고를 하고, 이 사건 제1 수입신고에 대해 개별소비세 2,131,933,000원, 부가가치세 213,193,300원 및 가산세 660,339,850원 등 합계 3,005,466,150원을, 이 사건 제2 수입신고에 대해 개별소비세 2,179,598,000원과 부가가치세 281,519,640원 합계 2,461,117,640원을 각 추가로 납부했다.

6. 원고의 관세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입신고에 대해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초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10.26.경부터 2023.1.19.경까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 별지 1, 2 각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2) 피고는 별지 1, 2 각 ‘거부처분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별지 1 ‘대전세관장의 경정거부처분’ 기재 7건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하고, 별지 2 ‘천안세관장의 경정거부처분’ 기재 9건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하며, 위 각 처분을 통칭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즉,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가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보다 더 정확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나. 본세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물품의 운송 기간은 5~17일 정도로 매우 짧아 산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물품을 실은 석탄전용선의 화물창은 외부공기와 수분의 유입이 차단되는 등 이 사건 물품의 성상이 하역지에서 변화했을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성질이나 품질은 표본 분석을 통해 결정되는데, ①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는 SGS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이하 ‘ASTM’이라 한다)의 석탄 시료 채취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것으로, ASTM 기준에 따르면 1로트(기준 석탄량)를 5만톤으로 가정했을 때 200톤마다 3~5kg의 시료를 총 247회에 걸쳐 기계식으로 정확하게 채취하나, ②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는 시료채취삽을 이용해 5,000톤마다 3kg씩 소량의 시료를 총 10회밖에 채취하지 않고, 시료채취 공인기관이 아닌 발전설비 운전정비 업체에 불과한 원고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것인바,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는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보다 신뢰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가산세 관련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장에게 “선적항의 석탄샘플 분석 결과에 기초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할 경우 이를 토대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갑 제3호증), ② 관세청장은 2017.1.26.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장에게 “국제공인검증기관이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채취·조제해 수입자에게 송부한 시료는 분석검사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으며(갑 제4호증), ③ 광주세관장은 2018.1.4. 원고를 포함한 5개 발전사에게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초로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석탄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했다가, 같은 해 5.18. 해당 부분을 취소했고(갑 제5호증), ④ 관세청장은 2018.9.7. 관세법령정보포탈에 석탄 수입 시 선적지 분석결과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선적지 물품의 성질, 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 수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선적지의 성분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게시했다(갑 제6호증). 이처럼 과세관청은 수차례에 걸쳐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입장을 반영해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수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가산세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제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준부라고 할 것이고,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로부터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원칙적으로 피고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경험의 법칙에 비춰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기초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원고가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본세 관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1) 과세물품 성질에 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

가) 「관세법」은 제243조 제2항에서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44조 제1항에서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라고 입항전수입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법」 제16조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함으로써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으로 확정된 물품의 구체적인 성질이 어땠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확인서 내지 증명서, 선적항 또는 하역

항에서 검사기관이 수행한 분석 결과, 수입국 세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관세법」이나 관련 법령이 이에 관해 특정한 자료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성질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각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입항전수입신고에 있어서는 입항 전 선적항에서 이뤄진 분석 결과만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6.8.11.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선적항의 석탄 샘플 분석 결과에 기초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할 경우 이를 토대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점, 2017.1.26. 관세청으로부터 국제 공인 검증기관에서 채취·조제된 시료는 석탄의 분석 검사 시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점, 2018.1.4. 광주세관장으로부터 선적지 분석결과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기준을 통보받은 점, 2018.9.7. 관세청장이 석탄 수입 시 선적지 분석결과로 수입신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게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의 성상은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 회신 내용은 과세가격 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보이고, 그 회신에서도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6조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광주세관장의 위 업무처리기준 역시 「관세법」 제16조에 따른 수입신고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오히려 선적항에서 발행한 성분분석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이 신고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를 하되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석탄의 성상 분석결과로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의 이 사정들은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나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와 신뢰도를 판단할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물품 중 선적지 분석결과가 5,000kcal/kg 미만이었던 물품의 경우에는 그 순발열량이 이 사건 각 수입신고 당시 5,000kcal/kg 이상이었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물품 중 선적지 분석결과가 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이었던 물품의 경우에는 그 순발열량이 이 사건 각 수입신고 당시 5,500kcal/kg 이상이었는지 여부다.

이에 관해 광주세관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성질이 선적지와 하역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하역지에서의 성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관세 조사 결과를 통지했고, 원고 또한 이를 기초로 2017.12.28.경부터 2018.1.26.경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이거나 5,500kcal/kg 이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수정신고한 다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에 이 사건 물품의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이거나 ‘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2021.10.26.경부터 2023.1.20.경까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액경정청구를 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을 제2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 등

(1) 원고는,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는 인부가 공구를 이용해 적재된 석탄 표면에서 수작업으로 시료를 채취해 이뤄진 반면,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는 기계적인 시료채취 방식(Mechanical Sampling) 중 가장 적합한 ASTM D2234 I-B-1 방식²⁾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가 더 신뢰성 및 정확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원고는 그와 같은 취지로 제1심에서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와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표를 작성·제출했다).

그러나 ① 별지1 ‘대전세관장의 경정거부처분’ 기재 각 수입신고에 관한 선적지 분석결과의 경우, 그중 일부는 수작업에 의한 시료채취 방식(Manual Sampling) 중 하나인 ASTM D2234 II-D-1 방식³⁾에 따른 것으로 돼 있고, SGS는 그 분석증명서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수동 샘플은 확률표본 추출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밀도, 표준오차 또는 편향 등의 통계적 추론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를 통해 수작업에 의한 시료채취 방식(Manual Sampling)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일부는 선적될 때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ASTM D2234에 의해 시료를 채취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이고, 나머지도 시료를 ASTM 기준에 의해 채취됐다고 기재돼 있을 뿐이므로,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2) 선적항에서 표본을 채취하고 조제하는 방법은 ASTM D2234 또는 D7430에 따른다. ASTM D2234(Standard Practice for collection at a Gross Sample of Coal)에 따른 표본은 전체 물량에서 인크리먼트(increment, 채취기를 1회 사용해 채취한 소량의 로트 분량)를 여러 개 채취하고, 그 인크리먼트들로부터 분석에 필요한 양을 작게 나눠 축분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ASTM D2234에서는 인크리먼트 채집방법, 수거조건, 채집간격을 Condition I -B-1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한다. Condition 뒤에 따라오는 로마자는 인크리먼트 채집 방법을 구분하는데 기계식(I)과 수동식(II)으로 구분되고, 로마자 다음의 알파벳은 인크리먼트 수거조건을 뜻한다(A는 정지된 컨베이어의 평행면으로 절단된 전체 단면에서 채취, B는 이송중인 컨베이어로부터 전체 단면에서 채취, C는 이송중인 컨베이어로부터 전체 단면이 아닌 일부분에서 채취, D는 석탄 더비, 철도 차량, 바지선 또는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부터 정지된 상태에서 채취다).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숫자는 인크리먼트를 채집함에 있어 각 인크리먼트 간의 간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로트마다 일정한 시간 또는 양을 간격으로 정하는 Systematic Spacing(1)과 로트마다 시간 또는 양을 무시하고 임의로 간격을 정하는 Random Spacing(2)으로 구분된다. ASTM D2234 I-B-1은 컨베이어 벨트로부터 낙하하는 지점의 전체 단면으로부터 기계적인 방법으로 채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ASTM D2234 II-D-1은 적재된 상태의 석탄 표면에서 수작업으로 임의로 간격을 정해 채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료를 채취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② 별지2 ‘천안세관장의 경정거부처분’ 기재 각 수입신고에 관한 선적지 분석결과의 경우, 일부는 수작업에 의한 시료채취 방식(Manual Sampling) 중 하나인 ASTM D2234 II-D-1 방식에 따른 것으로 돼 있고, 다른 일부는 그 시료채취 방법이 정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 나머지 6건은 시료가 원고가 주장하는 ASTM D2234 I-B-1 방식에 따라 채취됐다고 기재돼 있으나, 그중 1건은 선적지에서의 분석 당시부터 5,500kcal/kg 이상의 순발열량을 보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2)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입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약 20~30일 전에 선적지 분석을 위한 시료가 채취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선적항에서의 분석결과 또한 입항전수입신고 시점과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① 「관세법」 제2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하면, 입항전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그 선박 등이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신고가 가능한 점, ② 실제로 원고는 입항일 1~2일 전에 이 사건 각 수입신고를 해 온 점, ③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석탄을 입항전수입신고한 다음 입항 후 검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석탄의 성질이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하역지에서의 분석보다 선적지에서의 분석이 이 사건 각 수입신고 일자에 더 가까운 시점에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밖에 SGS는 러시아 소재 검사기관으로 그 실제 검사 방법이나 업무 수행 방식의 신뢰도, 정확성 등을 원고, 피고를 비롯한 국내 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SGS가 스스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SGS가 석탄 표본을 어떠한 방식으로 채취 및 검사했는가 하는 점은 그 분석 결과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 중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시료채취 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가 그 시료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채취해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보다 월등히 높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 등

(1) 원고는 2006.1.경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기구인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의 상호인정협정(MRA)에 서명한 인정기관이다]로부터 ‘국제 공인 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석탄의 발열량을 포함해 석탄의 품질에 대한 다양한 항목을 시험·검사하는 데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 중 하나는 ‘석탄의 발열량 분석(KS E 3707, ASTM D5865)’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발행하는 석탄의 품질에 관한 시험성적 및

분석자료는 국내외에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연료정책 수립 및 사업화 가능성 검토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석탄의 품질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더해 ① 「석탄산업법」 제25조 제3항은 석탄 또는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검사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2는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석탄의 검사 기준을 규정하면서 '2. 검사방법' 중 '다. 시료채취방법' 항목에서 "2) 시료는 석탄을 화차 또는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내릴 때 및 실을 때에도 채취할 수 있다", "3) 시료는 로트에서 단위시료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료채취기에 의하여 무작위로 채취한다. 이 경우 단위시료의 크기(중량)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인부가 시료채취기(시료채취삽)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을 검사 방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석탄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품질검사를 담보하기 위해 '발전연료 시료채취 업무절차서'라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료채취는 "㉠ 한전산업개발 시료채취원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작업이 시작되면, Sampling House 내의 시료채취기를 작동한다. ㉡ 시료채취설비의 용기가 채워지면 매 Shift당 1회 시료를 시료 전량을 쏟아 골고루 혼합하고 원추사분법으로 축분 조제해 최종 5kg 정도를 시료조제실로 운반한다. ㉢ 자동시료채취가 곤란할 경우에는 5,000톤마다 1회씩 벨트에서 수동으로 시료를 채취한다"는 순으로 이뤄지는 점, ③ 원고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검사에 관한 사무를 에너지 전문기업인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하역지에서의 시료채취방법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①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발전공기업으로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등 발전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발전의 원료로 사용될 석탄의 성상과 품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납세의무자'이자 '국제 공인 석탄시험기관'인 원고 스스로 수입된 이 사건 물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선적지 분석결과 보다 순발열량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소비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점, ③ 원고가 유연탄 수입 시 수출업자가 송부한 표본을 매번 분석해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해 유연탄과 무연탄을 혼합해 실제로 발전에 사용될 원료를 만드는 작업인 '혼탄' 관리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점, ④ 더욱이 원고는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가 선적지 분석결과보다 오차범위인 -137kcal/kg 이하로 낮은 경우 수출업자에게 대금 감액을 요구하기 위한 용도로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를 활용해 온 점, ⑤ 원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 업무와 회계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석탄의 성상과 품질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결과 발전량이 저하되는 등 발전사업에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석탄 수출업자에게 과도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와 신뢰도 및 정확성이 선적지 분석결과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이에 대해 원고는 “석탄 거래가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계약으로 이뤄지고, 본선인도조건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선적지 품질조건’으로 품질을 결정하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도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역거래조건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관세 등 비용분담이나 운송의 위험부담 등에 대한 책임주체를 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관세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무역거래조건에 구속된다면, 관세 부과 의 형평에 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 밖의 사정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해 보면, 이 사건 하역지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상세하고도 정밀한 전수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신속한 통관이라는 납세의무자(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으로서 입항전수입신고 대상 물품 중 일부만을 무작위로 선별해 검사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신뢰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2) 입항전수입신고를 통해 수입된 물품은 납세의무자(수입자)의 지배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세관청으로서 수입물품의 현황, 성상 등에 대한 검사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납세의무자’이자 ‘국제 공인 석탄시험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자체 분석해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 또는 5,500kcal/kg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를 얻었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수정신고를 했다.

(3) SGS는 선적지에서 이 사건 물품을 분석하면서 ‘매수인용 샘플’과 ‘심판용 샘플’을 별도로 채취해 ‘매수인용 샘플’을 원고에게 송부했다⁴⁾. 원고는 수입된 이 사건물품을 자체 분석했

4) 유엔탄의 성분분석 및 품질확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선적항에서 SGS 등 국제공인검증기관이 ASTM 기준에 따라 ① 선적분 분석을 위한 표본(sample for shipment analysis), ② 구매자(수입자)를 위한 표본(buyer sample), ③ 중재를 위한 제3기관 보관용 표본(umpire sample)을 각 3kg씩 동일하게 채취 및 조제한다. 수출자는 ①번 표본을 분석해 선적항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송품장(Invoice)을 발행해, 수입자에게 송부한다. 송품장상 가격은 선적항 분석증명서값과 계약보증치를 반영해 1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으로서 수입신고시 거래가격(잠정가격)이 된다. ②번 표본은 수입자에게 송부되고, ③번 표본은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송부되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적항 분석증명서상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수출자는 ③번 표본을 다른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심판 분석을 의뢰한다. ③번 표본에 대한 심판분석 결과는 거래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품질로 인정되고, 그 분석결과와 계약보증

고, 그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이거나 5,500kcal/kg 이상이라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원고는 ‘매수인용 샘플’ 등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의 종류와 성상 등을 재차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물품도 모두 소진해 버렸다(더욱이 원고는 광주세관의 조사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개별소비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물품의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이거나 5,500kcal/kg 이상이라는 이 사건 하역장 자체 분석결과를 피고 등에 밝히지도 않았다).

(4) 이와 같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과세의 한계 속에서, 이 사건 물품을 보유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하역장 자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정신고를 했고, 이후 약 4년 동안 피고 등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의 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이거나 5,500kcal/kg 미만으로 새롭게 분석됐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수입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및 납부된 개별소비세 등에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가산세 관련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입신고를 한 이후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물품의 성질을 판단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는 점[「관세법」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치를 비교해 2차적으로 가격조정이 이뤄진다.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제32조의4 제6항 제2호)],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잠정가격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변동 가능성’이라고 했음에도 확정가격 신고를 하면서 그 개별소비세율을 정정하지 않았던 점, ④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정하면서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돼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점, ⑤ 원고로서는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IV. 결어

이 판결은 입항전수입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과세물건의 성질은 수입신고 당시의 실질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법원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하역지에서 물품의 성질을 분석한 결과가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봤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춰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기초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원고가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가산세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본 판결은 수입물품의 성질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 중대형 차량 및 버스 -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1. 개요 및 경과



이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 본지는 2025년 제2141호(8.4. 발행)에서 '미국의 수입조정과 관련한 한국 수출품의 HSK 코드 분석 ③'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분품 편을 수록한 바 있다. 그후 미국 상무부는 11월부터 중대형 차량과 그 부분품, 버스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까지(2026.1.31. 기준) 추가된 조치를 반영한 분석 결과를 게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3월 26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경량트럭 및 자동차 부분품에 25%의 추가관세율을 부과하는 포고문(Proclamation 10908)에 서명했다. 포고문의 부속서에는 HS 제8703호와 제8704호의 자동차 중 미국의 HTSUS 8단위 기준으로

17개 코드가 언급돼 있으며, 그 밖에도 HS 제40류부터 제94류에 걸쳐 자동차 부분품 및 연관제품에 대해 HTSUS 4단위, 6단위, 8단위, 10단위 기준으로 130개 코드가 규정돼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개정된 미국의 HTSUS 제99류 주 제33호 (b)항과 (g)항에 명시돼 있다.

이어서 2025년 10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형 차량과 그 부분품 및 버스에 10~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고문(Proclamation 10984)에 서명했다. 이 내용은 개정된 미국의 HTSUS 제99류 주 제38호 (b)항과 (c)항에 명시돼 있다.

이 글에서는 포고문 10908과 10984의 부속서에 수록된 미국 HS 코드(이하 ‘HTSUS’라 한다)를 기준으로 대상 제품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응되는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상의 코드(이하 ‘HSK’라 한다)를 연계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수입조정 대상 중대형 차량과 그 부분품, 버스(포고문 10908)

포고문에서 미국은 중·대형차(MHDV, Medium and Heavy-Duty Vehicle)와 그 관련 부품은 병력, 무기 체계, 지상 방어 차량 및 주요 보급품의 수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쟁부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속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현재의 이들 제품 수입 수량과 상황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정의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저해할 위험이 된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포고문의 부속서에는 미국의 HTSUS 8단위 및 10단위 기준으로 217개 코드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물품은 다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로드 트랙터, 대형 픽업트럭, 박스 트럭 등 중·대형 차량 25개 품목 : 25% 관세 부과
- ② 엔진, 변속기, 타이어, 새시 등 중·대형차용 주요 부품 182개 품목 : 25% 관세 부과
- ③ 버스, 대중교통 버스, 대형 코치 등을 포함한 버스 제품군 10개 품목 : 10% 관세 부과

구체적인 수입조정 대상 물품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중대형 차량(Medium and Heavy Duty Vehicle)(수입조정 대상 25개 코드)¹⁾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2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8701.21	0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²⁾	8701.21-1000 8701.21-2000
8701.22	0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1.22-1000 8701.22-2000
8701.23	0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1.23-1000 8701.23-2000
8701.24	00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8701.24-1000 8701.24-2000
8701.29	00	- 기타	8701.29-1000 8701.29-2000
8704		화물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10	- 캡 새시(Cab chassis)	8704.10-0000
	50	- 기타	
8704.2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11	-- 캡 새시(Cab chassis)	8704.22-1011
	51	-- 기타	8704.22-1012 8704.22-1091 8704.22-1092 8704.22-9010 8704.22-9020 8704.22-9090
8704.23	01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8704.23-1010 8704.23-1020 8704.23-9010 8704.23-9020 8704.23-9090

1) 표에서 음영처리된 부분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2) 미국 관세율표(HTSUS)에서는 물품 세분류 시 그룹 구분을 위한 dash(-)를 사용하지 않으나 이 글에서는 독자들이 세분류 체계에서 계층(hierarchy)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의로 dash를 사용했다.

3) HSK 연계 항목에서 'ex'로 표시된 것은 'ex-out'을 의미하며 해당 코드에 포함되는 물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연계됨을 의미한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4.3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32	01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32-1010 8704.32-1020 8704.32-9010 8704.32-9020 8704.32-9090
8704.4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4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42	00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8704.42-1010 8704.42-1020 8704.42-9010 8704.42-9020 8704.42-9090
8704.43	00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8704.43-1010 8704.43-1020 8704.43-9010 8704.43-9020 8704.43-9090
8704.5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5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704.52	00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8704.52-1010 8704.52-1020 8704.52-9010 8704.52-9020 8704.52-9090
8704.60	00	기타(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704.60-1010 8704.60-1020 8704.60-9010 8704.60-9020 8704.60-9090
8704.90	01	기타	8704.90-1010 8704.90-1020 8704.90-9010 8704.90-9020 8704.90-909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생략>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8705.40-0000
8705.90	00	기타	
	10	- 이동방사선차	
	20	- 이동 진료차	
	80	- 기타	ex ³⁾ 8705.90-1010 8705.90-1090 8705.90-9010 8705.90-9020 8705.90-9030 8705.90-9040 8705.90-9060 8705.90-9070 8705.90-9090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나 제8704호의 것	
	03	-- 소호 제8704.21호나 제8704.31호의 것	ex 8706.00-4000
	05	-- 기타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또는 제8701.29호의 것	ex 8706.00-1000
	40	--- 제8702호의 것	
	75	--- 제8704호의 것	ex 8706.00-4000
	15	- 제8703호의 것	
	25	- 제8705호의 것	8706.00-500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3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50	-- 기타	ex 8706.00-1000
8709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1		차량	
8709.11		- 전기식의 것	8709.11-0000
8709.19		- 기타	8709.19-0000

중대형 차량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호 제8701.2호에 포함되는 세미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Road tractor)다. 로드 트랙터는 스스로 화물을 싣는 일반 트럭과 달리, 뒤에 트레일러(Trailer)를 연결해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특수 구동 차량을 말한다.

물류 현장에서는 일반 화물트럭(제8704호)보다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조합이 선호된다. 일체형 트럭은 짐을 싣고 내리는 동안 차량이 현장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시간적 손실이 큰 반면, 트랙터는 짐이 실린 세미트레일러를 현장에 떼어놓고 즉시 미리 상차된 다른 트레일러를 연결해 운행할 수 있으므로 화물차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 밖에도 하나의 트랙터로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트레일러의 적재량이 보통의 일체형 화물차보다 많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 사진이 수입조정 대상인 로드 트랙터이고 오른쪽 사진은 로드 트랙터가 세미트레일러를 결합해 운송 중인 사례다. **트랙터에 결합된 세미트레일러는 자동차 또는 중대형 자동차 수입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알루미늄과 철강제품 수입조정 대상에는 포함된다.**

● 로드 트랙터(좌, 수입조정 대상) & 세미트레일러가 결합된 트랙터(우) ●



제8701호에는 로드 트랙터 이외에 농업용, 임업용, 토목건설용의 다양한 트랙터가 분류된다. 로드 트랙터를 제외한 나머지 트랙터는 수입조정 대상이 아니다.

● 다목적 농업용 트랙터(수입조정 비대상) ●



그 밖에 제8704호의 화물차 중 소호 제8704.10호의 덤퍼와 총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가 수입조정 대상이다. 또한 제8705호에서는 특수용도차 중 화물 수송과 관련 있는 콘크리트 믹서차 등이 수입조정 대상이다.

2) 중대형 차량의 부분품(수입조정 대상 182개 코드)

□ 제40류~제83류의 물품(수입조정 대상 24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 <후략>		
4009.1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009.1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ex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 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11호 차량 용의 브레이크 호스	4009.12-0000	
	50	-- 기타		
4009.2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생략>		
4009.2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ex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 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11호 차량 용의 브레이크 호스	4009.22-0000	
		<생략>		
4009.3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생략>		
4009.3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ex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 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11호 차량 용의 브레이크 호스	4009.32-0000	
		<생략>		
4009.4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생략>		
4009.42	00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ex	4009.42-0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제8705호, 제8711호 차량용의 브레이크 호스		
		<생략>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자동차용을 포함한다]		
	10	- Radial 구조의 것		
	50	- 기타	ex 4011.10-2000	4011.10-9000
4011.20		버스용·화물차용		
	10	- Radial 구조의 것		
		-- 고속도로용의 것		
	05	--- 경량 트럭		
	15	--- 기타	ex 4011.20-1010	ex 4011.20-1090
		-- 비고속도로용의 것		
	25	--- 직경 40.6cm 이상인 림(rim)에 사용하기 위한 것	ex 4011.20-1010	ex 4011.20-1090
	35	--- 기타	ex 4011.20-1010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 <후략>		
4012.1		재생타이어		
		<생략>		
4012.19		- 기타		
	20	-- 소호 제 8701.91.10호, 제8701.92.10호 제8701.93.10호, 제8701.94.10호, 제8701.95.10호의 트랙터 또는 제84류와 제8716.80.10호의 농업용·원예용 기계나 도구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 기타		
	40	--- Radial 구조의 것	ex 4012.19-0000	
	80	--- 기타	ex 4012.19-0000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생략>		
		- 기타		
	60	-- 고속도로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트랙터를 포함한다)이나 제8705호 차량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ex 4012.20-9010	ex 4012.20-9020
			ex 4012.20-9090	
		<생략>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용·화물차용	ex	4013.10-1000 4013.10-2000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생략>				
4016.99		- 기타		
<생략>				
	60	-- 기타		
	10	--- 자동차의 기계적 부품	ex	4016.99-9000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2		접합 안전유리		
7007.21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11	-- 윈드쉴드(windshield)		
	10	--- 제87류의 자동차용의 것	ex	7007.21-1000 ex 7007.21-2000
	90	--- 기타		
	51	-- 기타	ex	7007.21-1000 ex 7007.21-2000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7009.10-0000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 자동차 서스펜션용으로 적합한 것		
	30	-- 총중량이 4톤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용의 것		7320.10-1000
	60	-- 기타		7320.10-2000
	90	- 기타		7320.10-9000
7320.20		나선형 스프링		
	10	- 자동차 서스펜션용으로 적합한 것	ex	7320.20-1000
<생략>				
8301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물쇠 ... <후략>		
8301.20		자동차용 자물쇠		8301.20-0000
8302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후략>		
8302.10		경첩 및 그 부분품		
		- 철강, 알루미늄, 아연제의 것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30	-- 자동차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ex 8302.10-0000
<생략>			
8302.30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	- 철강, 알루미늄, 아연제의 것	8302.30-0000
	60	- 기타	

이 그룹에서 언급된 제4009호의 물품(브레이크 호스)은 포고문 10908에서 규정한 자동차 및 경량트럭용 부분품과도 겹친다. 즉, 브레이크 호스는 소형 자동차용이든 중대형 자동차용이든 모두 수입조정 대상이라는 의미다.

제4011호에는 신제품인 고무제의 공기타이어가 분류되고 제4012호에는 중고품이나 재생품인 타이어가 분류된다. 수입조정 대상에 있어서는 신제품 타이어와 재생 타이어의 기준이 다른데, 제4011호 타이어는 버스, 승용차, 화물차의 것, 즉 제8702호, 제8703호 및 제8704호 차량의 것이 수입조정 대상인 반면, 제4012호의 타이어는 이들 차량과 항공기용의 것을 제외한 기타의 타이어만 적용된다. 이는 포고문 10908에서 규정한 기준과도 대체로 유사하다.

제7007호에는 자동차·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 안전유리가 분류된다. 포고문 10908은 접합안전유리 중에서도 HTSUS 제7007.21.11호의 'Windshield'는 수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포고문 10984는 Windshield를 수입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제16부, 제90류 및 제94류의 물품(수입조정 대상 86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3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4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지 않는 것	
	05	---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하기 위한 것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것	
	14	---- 중고 또는 재생	ex 8407.34-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18	---- 기타	ex	8407.34-9000
	25	--- 기타	ex	8407.34-1000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8407.34-9000
	35	---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하기 위한 것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것		
	44	---- 중고 또는 재생	ex	8407.34-9000
	48	---- 기타	ex	8407.34-9000
	55	--- 기타	ex	8407.34-1000
			ex	8407.34-9000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것	ex	8408.20-1000
			ex	8408.20-2000
			ex	8408.20-3000
			ex	8408.20-4000
			ex	8408.20-5000
8409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9		기타(항공기 엔진을 제외한 것)		
8409.91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10	-- 주철부품[세척(Cleaning) 공정보다 더 나아가지 않았으며, 오직 Fin, 게이트, 스프루, 라이저를 제거하거나 마감 가공기계에 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계 가공된 것]		
	4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것	ex	8409.91-1000
<생략>				
8409.99		- 기타		
	10	-- 주철부품[세척(Cleaning) 공정보다 더 나아가지 않았으며, 오직 Fin, 게이트, 스프루, 라이저를 제거하거나 마감 가공기계에 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계 가공된 것]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0	--- 소호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의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것	ex	8409.99-7000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 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10	- 압축점화식 엔진용의 연료분사펌프		8413.30-1000
	90	- 기타		8413.30-2000 8413.30-3000 8413.30-4000 8413.30-9000
8413.9		부분품		
8413.91		- 펌프의 것		
	10	-- 압축점화식 엔진용의 연료분사펌프의 것	ex	8413.91-2000
	20	-- 펄프 및 종이 제조용의 스톡펌프의 것		
	90	-- 기타		
	10	--- 제8413.30.90호의 것	ex	8414.91-2000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 <후략>		
8414.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40	- 1/4 마력을 초과하지 않는 것		
	80	- 기타		
		-- 스크루 타입		
		-- 기타		
		--- 암모니아를 제외한 모든 냉매용의 것		
	30	---- 자동차용의 것	ex	8414.30-1000 ex 8414.30-2000
<생략>				
8414.5		팬(Fan)		
8414.51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 ... <후략>		
8414.59		- 기타		
	10	-- 파이프 오르간용 블로워		
	15	-- 마이크로 프로세서, 통신장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냉각시키기 위한 것		
		-- 기타		
	30	--- 터보차저와 수퍼차저	ex	8414.59-9000
	65	--- 기타		
	40	---- 자동차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	ex	8414.59-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생략>				
8414.80		기타 - 기체압축기		
	05 00	-- 터보차저와 수퍼차저	ex	8414.80-9211 8414.80-9219 8414.80-9220 8414.80-9230
<생략>				
8415		공기조절기 ... <후략>		
8415.2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8415.20-0000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8421.23-1000 8421.23-2000 8421.23-9000
8421.3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2		-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 ... <후략>		8421.32-0000
8425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 ... <후략>		
8425.4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8425.42		- 그 밖의 잭과 호이스트(액압식으로 한정한다)		
8425.49		- 기타		8425.49-1000 8425.49-2000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 <후략>		
8426.9		기타		
8426.91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8426.91-0000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10	- 제8425.11호 또는 제8425.19호 기계의 것		
	90	- 기타	ex	8431.10-0000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볼베어링(ball bearing)		
	10	- 샤프트 일체형 볼베어링	ex	8482.10-2000 8482.10-9000
	50	- 기타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04	-- 비연삭 베어링		
		-- 기타		
		--- Radial 베어링		
		---- 단열(single row) 베어링		
	32	----- 최대 부하 베어링(maximum or full capacity type)		
		----- 기타 베어링		
	36	----- 직경 9mm 미만의 것		
	44	----- 직경 9mm 이상 30mm 이하의 것	ex	8482.10-2000
			ex	8482.10-9000
	48	----- 직경 30mm 초과 52mm 이하의 것	ex	8482.10-2000
			ex	8482.10-9000
<생략>				
8482.20	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것 포함]		
		- 세트 상태로 제시된 컵과 콘 어셈블리		
		-- 휠 허브 유닛		
	20	--- 플랜지가 결합된 것	ex	8482.20-0000
	30	--- 기타	ex	8482.20-0000
		-- 기타		
	40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61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고 203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생략>				
		- 별도로 제시된 콘 어셈블리		
	70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81	-- 외경이 102mm를 초과하고 203mm를 초과하지 않는 컵을 가진 것	ex	8482.20-0000
<생략>				
8482.40	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니들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482.40-0000
8482.50	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482.50-0000
8483.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1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및 로터식 내연기관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8483.10-9010 8483.10-9090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3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제외한다)		
8501.3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전동기		
	20	--- 750와트 초과 14.92킬로와트 이하인 것	ex	8501.32-1000
		--- 기타		
	45	---- 제8703.40호 내지 제8703.80호의 자동차의 주된 동력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전기모터		
	55	---- 기타		
	20	----- 민항기용의 것		
	40	----- 기타	ex	8501.32-1000
	61	-- 발전기		8501.32-2000
8501.33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전동기		
	20	--- 75킬로와트 초과 149.2킬로와트 미만인 것		
	40	---- 민항기용의 것		
	80	---- 기타	ex	8501.33-1000
	30	--- 149.2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이하인 것	ex	8501.33-1000
	40	--- 기타	ex	8501.33-1000
	61	-- 발전기		8501.33-2010 8501.33-2090
8501.34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30	-- 전동기		8501.34-1000
	61	-- 발전기		8501.34-2000
8501.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20	- 출력이 37.5와트 초과 74.6와트 이하인 것	ex	8501.40-1000
	40	- 출력이 74.6와트 초과 735와트 이하인 것	ex	8501.40-1000 8501.40-2000
	50	- 출력이 735와트 초과 746와트 미만인 것	ex	8501.40-2000
	60	- 기타	ex	8501.40-2000 8501.40-3000 8501.40-4000
8501.5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8501.5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20	-- 37.5와트 초과 74.6와트 이하인 것		8501.51-0000
	40	-- 74.6와트 초과 735와트 이하인 것		
	50	-- 735와트 초과 746와트 미만인 것		
	60	-- 기타		
8501.5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40	-- 750와트 초과 14.92킬로와트 이하인 것	ex	8501.52-9000
	80	-- 기타		
	20	--- 민항기용의 것		
	40	--- 기타	ex	8501.52-1000 8501.52-9000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 지에 상관없다)		
8507.10	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8507.10-0000
<생략>				
8507.90		부분품		
	40	- 연산축전지의 것	ex	8507.90-1000 8507.90-9000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 … <후략>		
8511.10		점화플러그		8511.10-1000 8511.10-2000 8511.10-9000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8511.20-1000 8511.20-9000
8511.30		배전기와 점화코일		8511.30-1000 8511.30-9000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8511.40-1000 8511.40-2000 8511.40-9000
8511.50		그 밖의 발전기		8511.50-1000 8511.50-9000
8511.80		그 밖의 기기		
		- 컷아웃 릴레이가 포함된 전압 및 전압-전류 조정기		
	20	-- 6, 12, 24볼트 시스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ex	8511.80-1000 8511.80-9000
	40	-- 기타		
	60	- 기타	ex	8511.80-1000 8511.80-9000
8511.90		부분품		
		- 컷아웃 릴레이가 포함된 전압 및 전압-전류 조정기 용의 것		
	20	-- 6, 12, 24볼트 시스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40	-- 기타		
	60	- 기타 부분품	ex	8511.90-1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ex	8511.90-9000
8512		자전거나 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 ... <후략>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20	- 조명용 기구		8512.20-1010 8512.20-1090
	40	- 시각 신호용 기기		8512.20-2010 8512.20-2090
8512.30		음향신호용 기구		8512.30-0000
8512.40		윈드실드 와이퍼, 제상기, 제무기		
	20	- 제상기와 제무기		8512.40-0000
	40	- 윈드실드 와이퍼		
8512.90		부분품		
	20	- 신호용 기구의 것	ex	8512.90-0000
		- 조명용 기구의 것		
	40	-- 자전거용의 것		
	60	-- 기타	ex	8512.90-0000
	70	- 제상기와 제무기의 것	ex	8512.90-0000
	90	- 기타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8		그 밖의 기기		
8519.81		-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 음성재생만 하는 것		
		---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20	---- 자동차에만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ex	8519.81-2000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와 텔레비전 카메라 ... <후략>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10	- 트랜시버		
	10	-- 시티즌 밴드(CB)	ex	8525.60-9000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8527.2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 없 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 음성기록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라디오와 테이프 플레이어가 결합된 것		
	15	--- 디지털 라디오 데이터 시스템(RDS) 신호의 수	ex	8527.21-1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신 및 디코딩이 가능한 음성 녹음 또는 재생 기기와 결합된 것	ex	8527.21-3010
			ex	8527.21-3090
	25	--- 기타	ex	8527.21-1000
			ex	8527.21-3010
			ex	8527.21-3090
	40	-- 기타		8527.21-2010
				8527.21-2090
			ex	8527.21-3010
			ex	8527.21-3090
				8527.21-9010
				8527.21-9090
8527.29		- 기타		
	40	-- FM 또는 AM/FM만 가능한 것	ex	8527.29-0000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 <후략>		
8536.4		계전기		
8536.41	00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05	-- 자동차 신호용 점멸기	ex	8536.41-0000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 이디) 광원		
8539.10	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 15.24cm 미만의 것		
	10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 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 호, 제8704호, 제8705호 또는 제8711호 차량 용의 것	ex	8539.10-0000
	30	-- 기타		
		- 15.25cm 이상		
	50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 8701.24호, 제8701.29호, 제8702호, 제8703 호, 제8704호, 제8705호 또는 제8711호 차량 용의 것	ex	8539.10-0000
8544		절연전선, 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 <후략>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 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8544.30-0000
9029.10		적산(積算)회전계, 생산량계, 택시미터, 주행거리계, 보 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40	- 택시미터		
	80	- 기타		9029.10-1000
				9029.10-2000
			ex	9029.10-9000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	
	20	- 자전거용 속도계	
	40	- 기타 속도계 및 회전속도계	
	40	-- 민간항공기용	
	80	-- 기타	9029.20-1010 9029.20-1090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20		차량용 의자	9401.20-0000

□ 제87류의 물품(수입조정 대상 72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6.00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나 제8704호 차량용의 것	
	03	-- 제8704.21호 또는 제8704.31호 차량용의 것	ex 8706.00-4000
	05	-- 기타	ex 8706.00-1000 8706.00-2000 ex 8706.00-4000
	15	- 제8703호 차량용의 것	8706.00-3000
	25	- 제8705호 차량용의 것	8706.00-5000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제8703호의 차량용	
8707.90		기타	
	1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50	- 기타	
	20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8701.24호, 제8701.25호 차량의 것	ex 8707.90-1000
	40	-- 제8702호 차량의 것	
	60	-- 제8704호 차량의 것	8707.90-3000
	80	-- 제8705호 차량의 것	8707.90-4000
	90	-- 기타 차량의 것	ex 8707.90-1000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30	- 범퍼		8708.10-0000
	60	- 범퍼의 부분품		
8708.2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 안전벨트		8708.21-0000
8708.22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 (윈드실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8708.22-0000
8708.29		- 기타		
	15	-- 도어 어셈블리	ex	8708.29-0000
		-- 스탬핑한 차체		
	21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25	--- 기타	ex	8708.29-0000
	51	-- 기타	ex	8708.29-0000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10	--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ex	8708.30-1000
	90	-- 기타		
	50	- 그 밖의 차량의 것	ex	8708.30-1000
			ex	8708.30-2000
			ex	8708.30-3000
			ex	8708.30-9000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 기어박스		
	11	-- 제8701.21호, 제8701.22호, 제8701.23호, 제 8701.24호, 제8701.29호 또는 제8702호, 제 8703호, 제8704호 차량용의 것		8708.40-0000
	3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5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 부분품		
	60	-- 농업용에 적합한 트랙터의 것		
	6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 기타		
	70	--- 주철제의 것		
	75	--- 기타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 트랙터용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11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31		--- 그 밖의 트랙터의 것	ex	8708.50-1000 ex 8708.50-2000
51		-- 제8703호 차량용의 것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61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 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 없다)	ex	8708.50-1000 ex 8708.50-2000
65		--- 비구동차축	ex	8708.50-1000 ex 8708.50-2000
		- 부분품		
		-- 트랙터용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7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7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	ex	8708.50-1000 ex 8708.50-2000
		-- 제8703호 차량의 것		
79		--- 비구동차축의 부분품		
		--- 기타		
81		---- 주철제의 것	ex	8708.50-1000 ex 8708.50-2000
		---- 기타		
85		----- 반축(half-shaft)	ex	8708.50-1000 ex 8708.50-2000
89		----- 기타	ex	8708.50-1000 ex 8708.50-2000
		-- 그 밖의 차량의 것		
91		--- 비구동차축의 부분품	ex	8708.50-1000 ex 8708.50-2000
		--- 기타		
93		---- 주철제의 것	ex	8708.50-1000 ex 8708.50-2000
		---- 기타		
95		----- 반축(half-shaft)	ex	8708.50-1000 ex 8708.50-2000
99		----- 기타	ex	8708.50-1000 ex 8708.50-2000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 트랙터용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05	--- 로드 휠	ex	8708.70-0000
	15	--- 부분품 및 부속품		
		-- 그 밖의 트랙터의 것		
	25	--- 로드 휠	ex	8708.70-0000
	35	--- 부분품 및 부속품	ex	8708.70-000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45	-- 로드 휠	ex	8708.70-0000
	60	-- 부분품 및 부속품	ex	8708.70-0000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 서스펜션 시스템(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 그 밖의 차량의 것		
	13	--- 맥퍼슨 스트럿	ex	8708.80-0000
	16	--- 기타	ex	8708.80-0000
		- 부분품		
	51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5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ex	8708.80-0000
		-- 기타		
	60	--- 주철제의 것	ex	8708.80-0000
	65	--- 기타	ex	8708.80-0000
8708.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 라디에이터		
	1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50	--- 그 밖의 차량의 것	ex	8708.91-0000
		-- 부분품		
	6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6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ex	8708.91-000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70	---- 주철제의 것	ex	8708.91-0000
	75	---- 기타	ex	8708.91-0000
8708.92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 부분품		
	6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6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ex	8708.92-0000
8708.93		- 클러치와 그 부분품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60	--- 클러치	ex	8708.93-0000
	75	--- 기타	ex	8708.93-0000
8708.94		-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운전박스		
	1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ex	8708.94-0000
	5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ex	8708.94-0000
		-- 부분품		
	6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6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ex	8708.94-000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70	---- 주철제의 것	ex	8708.94-0000
	75	---- 기타	ex	8708.94-0000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05	-- 에어백용 팽창기와 모듈	ex	8708.95-9000
		-- 기타		
	10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것		
	15	--- 그 밖의 트랙터의 것(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ex	8708.95-1000
			ex	8708.95-9000
	20	--- 그 밖의 차량용의 것	ex	8708.95-1000
			ex	8708.95-9000
8708.99		- 기타		
		-- 농업용으로 적합한 트랙터의 부분품		
	03	--- 고무를 함유한 진동제어용 물품	ex	8708.99-1010
			ex	8708.99-9000
	06	--- 볼베어링을 내장한 이중 플랜지 휠허브 유닛	ex	8708.99-1010
			ex	8708.99-9000
	16	--- 파워트레인의 그 밖의 부분품		
	23	--- 기타	ex	8708.99-1010
			ex	8708.99-9000
		-- 그 밖의 트랙터의 부분품(로드 트랙터를 제외한다)		
	27	--- 고무를 함유한 진동제어용 물품	ex	8708.99-1010
			ex	8708.99-9000
	31	--- 볼베어링을 내장한 이중 플랜지 휠허브 유닛	ex	8708.99-1010
			ex	8708.99-9000
	41	--- 파워트레인의 그 밖의 부분품	ex	8708.99-1010
			ex	8708.99-9000
	48	--- 기타		
	10	---- 무한궤도형 트랙터용의 트랙 링크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50	---- 기타	ex	8708.99-1010
		-- 기타	ex	8708.99-9000
	53	--- 주철제의 것	ex	8708.99-1020
			ex	8708.99-1030
			ex	8708.99-1040
			ex	8708.99-1050
			ex	8708.99-9000
		--- 기타		
	55	---- 고무를 함유한 진동제어용 물품	ex	8708.99-9000
	58	---- 볼베어링을 내장한 이중 플랜지 활허브 유닛	ex	8708.99-9000
		---- 기타		
	68	----- 파워트레인의 그 밖의 부분품	ex	8708.99-9000
8709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90		부분품		8709.90-0000

제16부, 제90류 및 제94류에 포함되는 부분품에 대해서는 포고문 10908과 10984에서 대체로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그룹에 포함되는 자동차 부분품은 소형차용이든 중대형차용이든 별 차이 없이 수입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버스 및 그 밖의 차량(수입조정 대상 10개 코드)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31	-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8702.10-2010
				8702.10-2020
				8702.10-3010
				8702.10-3020
	61	- 기타		8702.10-1010
				8702.10-1020
8702.2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미국 HTSUS 분류체계 및 수입조정 대상 물품			HSK 연계
HS	HTSUS	품명	
		갖춘 것	
	31	-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8702.20-1000
	61	- 기타	8702.20-2000
8702.3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 동기를 둘 다 갖춘 것	
	31	-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8702.30-1000
	61	- 기타	8702.30-2000
8702.40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31	-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8702.40-1000
	61	- 기타	8702.40-2000
8702.90		기타	
	31	- 16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	8702.90-2010
			8702.90-2020
			8702.90-3010
			8702.90-3020
	61	- 기타	8702.90-1010
			8702.90-1020

포고문에서는 제8702호에서 수입조정 대상인 물품을 HTSUS 8단위 기준으로 10개 코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10개 코드는 제8702호 전체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코드 수는 무의미하다. 제8702호의 하위 HSK 코드에 포함되는 차량 전부가 수입조정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3월 19일
판매 개시

관세·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4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미발효)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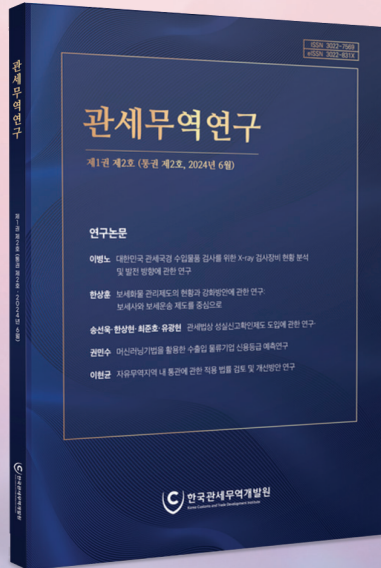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